

대구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가단107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783,7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무 현황

- (1) 원고는 1979. 3. 1.부터 2019. 2. 28.까지 C중학교 교사(공무원)로 근무하였다.
- (2) 원고는 2003. 3. 1. 'D 유치원'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9. 3. 1.경 이를 폐업하였다. 원고는 2005. 8. 1. 'E 유치원'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위 각 유치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바 없다.

나. 원고의 건강보험료 납부

- (1) 피고는, 'E 유치원', 'D 유치원'과 관련하여 각 개인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그 무보수 대표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개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개인부담금 50%),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30%를 각 부과, 징수하여 왔다.
- (2) 이에 따라 원고가 'E 유치원'과 관련하여 2013년 2월분부터 2021. 6.분까지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개인부담금)로 납부한 금액은 합계 18,641,350원이다.
- (3) 원고가 'D 유치원'과 관련하여 2013년 2월분부터 2019년 4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개인부담금)로 납부한 금액은 합계 7,473,470원이다.

다. 원고의 이의제기

- (1) 원고는 2021. 6.경 피고를 상대로 'E 유치원', 'D 유치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보험료를 부과, 징수해 온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7. 15. 위 각 유치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비대상 사업장으로 보아, 즉 원고를 "지역가입자"로 보아 2018. 6월분1) 부터 2021. 7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 장기보험료(가입자 50% 및 사용자 30%)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합계 14,995,1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여 주었다.
- (가) 피고 측은 D 유치원과 관련하여 2018. 6.분부터 2019. 2.월분 건강보험료의 합계 1,287,83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 (나) 피고 측은 E 유치원과 관련하여 2018. 6.분부터 2021. 6.분 건강보험료의 합계

8,084,11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22. 2.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각 유치원과 관련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개인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해당한다'고 보아, 다시 “직장가입자”로 구분하여 2018. 6월분부터 2021. 7월분(폐업 이후는 제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18, 을1호증의 1, 2, 을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내부 규정이 2013. 2. 1.자로 원고와 같은 무보수 유치원 설립자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음에도, 피고가 2013. 2. 1.부터 2021. 6.까지 원고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이를 징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 41,783,712원(= E 유치원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29,826,160원 + D 유치원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11,957,552원)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13. 2월분부터 2021. 5월분까지 건강보험료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보험료 납부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의 기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납부된 보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먼저 2013. 2.분부터 2018. 5월분까지의 부과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바,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참조). 그런데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떤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참조).

피고가 위 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려면 해당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알 수 있거나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2.경 피고의 업무처리 지침 변경이 있었음을 이유로 할 뿐 피고의 부과처분에 어떠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각 두 유치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개인사업장’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무보수라고 할지라도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직장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정당함에도, 피고 직원의 착오로 ‘법인사업장’의 무보수 대표자로 보아 지역가입자로 분류하여 2018. 6월분 이후분을 환급해주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각 두 유치원을 개인사업장으로 볼지,

법인사업장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법인사업장’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개인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직장가입자로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더구나 피고의 업무처리지침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개인사업장’의 무보수 사업자에 해당하여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 점, ④ 달리 피고의 위 기간 동안의 부과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기간 동안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그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징수한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위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에 관하여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보험료 납부로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은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의제기로 피고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2018. 6월분 전의 부과처분, 즉 2018. 5월분까지의 부과처분으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납부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2018. 6월분부터 2021. 6월분까지의 부과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자신이 위 각 두 유치원과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기간 동안의 부과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두 유치원과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직장보험료 등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종전 처분이 정당함에도 피고 직원의 착오로 환급하였던 것이고, 이후 다시 직장가입자를 전제로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환급된 부분에 대해 다룰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종전 부과처분에 근거하여 부과, 징수한 위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 등은 원고에게 이미 환급하였으므로(피고는 피고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환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착오로 인한 반환임을 이유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정

별지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제70조(보수월액)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 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

나.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피고 공단 업무처리지침 (사업장 관리)

5. 사업장별 수입정보 제공 (Home)

○ 개인사업장

-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 법인사업장

- 사업장(법인) :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대표자 포함) 또는 고액장이 있는 경우

- 공단(법인) :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종무위 또는 근로자(대표자 포함)가 있는 경우

※ 대표이사인 또는 법인 사업장 : 법인사업장에 대표이사는 국민연금보험료 신고대상으로, 대표이사 1인인 경우도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수입정보를 제공

6. 사업장 대표자 자격관리 (Home)

○ 대표자의 정의

- 사업장별 일정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대표자 사업장본부의 사업 운영의 전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대표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함

-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사업장은 대표이사 등 사업운영자

○ 대표자의 자격

- 법 제38조 및 제4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사용자, 법인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근로자로 지거나, 근로자가 대표자로 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자격 상실 후 권속처리 (보험료 후계청세으로 인해 자격 상실 후 무직)

- 다만, 법인사업장의 대표로서 보수가 없는 자는 직장가입 대상이 아님

- 법인의 각자대표의 경우, 각각 대표자로서 동일한 직위를 지니고 있어 사업장통속 승인을 통해 각자대표 복인 후 대표자 자격관리 - 본인 전담에 대표자 및 자비대표 복제

< 대표자 자격관리 원칙 >

※ 개인사업장 대표자 : 사용자로, 직장가입자 제공

- 소득세법 제38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또는 단체의 지배(주요결의권)에 대표자 포함

※ 법인사업장 대표자 : 근로자로, 직장가입자 제공, 단 부교수자는 제외

- 국제기판별 제38조 제3항에 의한 법인으로 또는 단체(주요결의권)에 대표자 포함

. 끝.

1)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2호(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에 따라, 이의제기일 기준 3년 전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불하여 주었다.